

# 공정경쟁규약 관련 학회 및 학술대회 인정 심사 규정

제정 : 2011. 4. 12.

개정 : 2012. 7. 10. / 2012. 12. 11. / 2013. 3. 12. / 2015. 11. 17. / 2018. 11. 13.

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,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,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정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(이하 “공정경쟁규약”이라 한다.)에 의한 “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”, “국제학회”, “학술단체”의 인정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심사) “학술대회” 및 “학회” 인정에 관한 사항은 대한의학회 학술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.)에서 심사한다. 다만, 학회 및 연구회가 아닌 학술단체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한의사협회의 심사절차 및 서식에 따른다.

제 3 조 (심사기준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인정 여부를 심사한다.

## 1.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

가.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행사 개최 3개월 이전까지 다목에 따른 구비서류를 대한의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나. 필수 요건 : 5개국 이상에서 보건의료전문가들이 참석(발표자, 좌장, 토론자가 아닌 청중으로 참가한 보건의료전문가들이 5개국 이상에서 참석)하거나 또는 회의 참가자 중 외국인이 150인 이상이고, 2일 이상 진행되는 국제규모의 학술대회

다. 구비 서류 :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인정 신청서(별표2 서식), 조직위원회 명단, 개최 예정 국제학술대회 프로그램, 전차 학술대회 개최 실적(별표5 서식) 및 결산, 대한의학회 회원학회에서 인정하는 산하학회(연구회 등) 증명서(해당기관에 한함),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, 기타

라. 결과보고 : 학술대회 종료 후 60일 이내에 학술대회 최종 프로그램과 참가국 및 외국인 참가자수(발표자, 좌장, 토론자가 아닌 청중으로 참가한 보건의료전문가들이 5개국 이상에서 내한하여야 한다)를 대한의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## 2. 국제학회

가. 필수 요건 : 5개국 이상에서 외국인 정회원 수가 100인 이상인 국내 소재 국제학회

나. 구비 서류 : 국제학회 인정 신청서(별표3 서식), 학회 정관(회칙), 임원 명단, 회원 명단 및 회원구성 현황, 최근 3년간 학술활동 실적(별표6 서식), 최근 3년간 발행

한 학술대회 초록집 또는 학회지 표지 및 목차, 전년도 예산 및 결산 현황,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, 기타

다. 인정 유효 기간 : 3년으로 하며 매년 한차례 학술대회 실적과 예산 및 결산 현황을 정기 보고 하여야 한다.

3. 학술단체 : 공정경쟁규약 세부운용기준 제4조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

가. 대한의학회 비회원학회는 나목에 따른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. 단, 대한의학회 회원학회는 공정경쟁규약에서 인정하는 공인된 학술단체로 본다.

나. 구비서류 : 학술단체 인정 신청서(별표4 서식), 학회 정관(회칙), 임원 명단, 회원 명단 및 회원구성 현황, 최근 3년간 학술활동 실적(별표6 서식), 최근 3년간 발행한 학술대회 초록집 또는 학회지 표지 및 목차, 전년도 예산 및 결산 현황, 대한의학회 회원학회에서 인정하는 산하학회(연구회 등) 증명서(해당기관에 한함),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, 기타

다. 인정 유효 기간 : 3년으로 하며 매년 한차례 학술대회 실적과 예산 및 결산 현황을 정기 보고 하여야 한다.

② 비회원학회가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를 신청할 경우에는 사전에 제3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에 대한 위원회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은 후 신청할 수 있다.

제 4 조 (심의비용) ①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, 국제학회 및 학술단체 인정 심사를 신청한 단체는 소정의 심의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제3조 제1항에 따른 심사비(부가세 포함)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

가. 회원학회의 경우 : 110,000원

나. 비회원학회의 경우 : 220,000원

2. 국제학회 : 330,000원

3. 학술단체 : 330,000원

제 5 조 (회의) 인정 심사를 위한 위원회 회의는 당해 위원장이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일정을 공지한다.

제 6 조 (회의록) 위원회는 인정 심사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고, 위원장이 서명하여 보관한다.

제 7 조 (의결) 인정 심사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8 조 (인준 및 결과통보) 위원회를 통과한 인정 심사 결과는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대한의사 협회를 경유하여 신청 단체에 각각 통보한다.

제 9 조 (보칙)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의학회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대한의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(심사기준 및 심의비용에 대한 경과조치) 제3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접수하는 신청서부터 적용한다.

#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인정 신청서

## (개최 지원 신청용)

### 1. 신청인

①주관단체명			
②주소		③우편번호	
		④담당자	
⑤전화번호		⑥팩스	
⑦이메일		⑧휴대폰	
⑨대한의학회 가입여부	회원학회 <input type="checkbox"/> 비회원학회 <input type="checkbox"/>	⑩대한의학회 회원학회의 산하학회 소속여부 ※비회원학회인 경우만 기재	있음 <input type="checkbox"/> (학회명: _____)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

### 2. 학술대회

⑪학술대회 명칭	(국문) (영문)		
⑫개최기간		⑬개최장소	
⑭참가국	국가명 기재 (총 개국)		
⑮외국인 참가자수 (별표5자 좌장 토론자 제외)	명		
⑯전차 학술대회 정보	있음 <input type="checkbox"/> (개최 주기: _____)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(이번이 1차 학술대회임 <input type="checkbox"/> )		

「학회 및 학술대회 인정 규정」 제3조에 따라 국제학술대회 인정 신청을 상기와 같이 의뢰합니다.

년    월    일

대표 (직인)

### 대한의학회 귀중

- ※ 구비서류 : 1. 조직위원회 명단  
2. 개최 예정 국제학술대회 프로그램  
3. 전차 학술대회 개최 실적(별표5 양식에 의거) 및 결산  
4.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

- ※ 작성방법 : ① 주관단체명과 대표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상 법인명과 대표자가 동일하여야 합니다.  
⑩ 대한의학회 회원학회에서 인정하는 산하학회(연구회 등)일 경우 산하학회 증명서를 필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  
⑭ 참가하는 국가명과 국가수를 모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







## 학술 활동 보고서(    년)

학 회 명	(국문)		
	(영문)		
주 소	☐		
전 화		창립년월일	
팩 스		e-mail	

국내 학술 활동						
전국 규모의 학술대회			연수교육 지역별집담회 심포지엄 워크숍 개최	연구비 지급제도	우수논문 에 대한 포상제도	전국적인 조사연구 실시
학술대회 발표 연제수 (포스터포함)	발표 논문 심사제도	학술대회 참가자수 (준회원포함)				
년(    )편	있다(    ) 없다(    )	(    )명	년(    )회	있다(    ) 없다(    )	있다(    ) 없다(    )	년(    )과제

국제 학술 활동		학회 운영			
초청 강의 활동	국제학술대회 유치 개최 유무	회원 수	회원 관리의 전산화 유무	학회사무실 보유	학회 상근 직원 채용
년(    )연제	유 (    ) 무 (    )	(    )명	유(    ) 무(    ) ※ DB명 또는 사용프로그램명 (    )	있다 (    ) 없다 (    )	(    )명

학회지 발간			
연간 발간 회수	게재 논문 심사제도	Index Medicus, SCI, SCI Expanded 등재 유무	학회지 투고규정에 대한의사협회 발간 용어집을 준용한다는 것을 명기함
년(    )회	있다(    ) 없다(    )	유(    ) 무(    ) ※ 색인지명(    )	예 (    ) 아니오(    )

※ 본 보고서는 최근 3년간의 학술 활동을 기준으로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  
 ※ 학술대회 초록집, 학회지를 발간한 경우 아래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  
 - 학술대회 초록집 표지와 목차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- 학회지 호별 표지와 목차